

제 호

##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

성명(명칭)

검사접수번호

이륜자동차신고번호

재검사기간

부적합내용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 
(지정정비사업자)

인

※ 재검사에 관한 안내

1.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·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이륜자동차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2. 재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